

국내·외 학술회의 발표지원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소속 전임교원의 국내·외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·외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.

제2조 (지원대상 및 범위) ① 국내·외 학술회의 논문발표 장려금 지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

②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국내·외 학회 또는 학술대회(회의)에 참가하여 본인이 직접 구두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(포스터를 포함한다)에 한하여 논문발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논문발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국제 학술회의 논문발표장려금은 학년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되 아시아지역은 학년도별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⑤ 동일과제를 2회이상 발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국내외 학술회의 논문발표장려금을 지원하고,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2인 이상이 동일과제를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하며 동일학회에서 2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할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지원한다.

제3조 (지원내용) ① 국내·외 학술회의 참가 및 논문발표 장려금은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.

1. 삭제 (2016.09.01.)

2. 국내 학술회의 논문발표: 학술활동지원비는 실경비로 지급하되 상한선은 10만원

3. 국제 학술회의 논문발표: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지원은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.

가. 아시아지역 39만원이내

나. 삭제(2016.09.01.)

다. 북중미 및 호주지역 65만원이내

라. 유럽,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 75만원이내

②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신청서 제출 후로 한다.

제4조 (지원신청)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출발전 출장신청서(논문발표)를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교

국내·외 학술회의 발표지원에 관한 규정(6-35-1)

무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1부
2. 발표논문 1부
3. 탑승권 또는 출·입국 확인(여권)사본 1부
4. 항공료 영수증(E-ticket 확인서) 및 결제 영수증 각 1부

제5조 (지원제한) ① 소규모 국제학술대회(한국을 포함한 4개국 이하)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②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원 또는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회의 성격의 학술대회(회의)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)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)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